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a href="http://www.daedeok.go.kr">http://www.daedeok.go.kr</a>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8-86호**  
**2018. 11. 14.(수)**

## 차 례

### 조 례(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조례 제1301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조례 제1302호) .....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조례 제1303호) ..12

### 규 칙(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64호) .....19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0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생태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파괴 없이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이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생태 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생태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생태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형 공정·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생태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생태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생태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주민
5. 그 밖에 공정·생태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생태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생태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생태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생태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구청장의 책무,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해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공정·생태관광 지원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0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  
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  
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  
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

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지원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5조).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0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

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등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장
3. 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에 따른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도록 정함(안 제8조).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6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전용 승용차”를 “전용·의전용 승용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중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를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또는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차형란 중 “다목적승용차”를 “다목적·그밖에 승용차”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3의 승용차량의 차형별란과 분류번호란

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 · 차형 ·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 운행기준 (제4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 · 운행기준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 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li> </ul>
	중형승용차	· 부구청장	
승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 구의회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li> </ul>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소형승용차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경형승용차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승용 (다목적·그밖에 승용차)	다목적·그밖에 승용차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초과 경과한 경우</li> <li>●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li> </ul>
	대형승합차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중형승합차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소형승합차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승합용	경형승합차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li> </ul>
	대·중·소형 및 경형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화물차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특수차	대·중·소형 및 경형	· 구 본청 및 산하 각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li> </ul>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 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경형, 다목적, 그밖에 승용차
구 본청	20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부구청장 1대, 업무용 1대)	17대
구 의회	1대	1대 (의전용)		
보건소	3대		1대	2대
복합문화센터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12대			12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근용	가. 구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	나. 그 밖의 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증산용	· 구 본청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 구 본청 등 :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 구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하수도사업용	· 구 본청 : 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	·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 생활민원처리 사업용으로 소형 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단위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소용	<p>- 구 본청 등 :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p> <p>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 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p> <p>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p> <p>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단위부서는 신규 청소 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p>
그 밖의 용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 차량 정수번호 부여(제8조 관련)

###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가 1
	· 중형승용차	가 2
	· 소형승용차	가 3
	· 경형승용차	가 4
	· 다목적승용차	가 5
	· 그 밖에 승용차	가 6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나 1
	· 중형승합차	나 2
	· 소형승합차	나 3
	· 경형승합차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다 1
	· 중형화물차	다 2
	· 소형화물차	다 3
	· 경형화물차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라 1
	· 엠브란스	라 2
	· 분노차	라 3
	· 진료차	라 4
	· 이동수리차	라 5
	· 급수·살수차	라 6
	· 트럭트랙터	라 7
	· 트레일러	라 8
	· 렉카차	라 9
	· 소방차	라 10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1

###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덕구 - 가 2 - 3

-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5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덕구 - 다 1 - 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선 7기 조직개편과 관련, 우리구 보유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신규구입을 통해 기관별 기준정수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량 별도정수 배정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3항).
- 차량의 교체에 있어 전용 승용차량으로만 되어 있던 것에 동일기준을 적용받는 의전용 전용차량을 추가 삽입하고, 차량교체 시 확인방법을 강화함(안 제12조).
- 공용차량 기준정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형 중 별도로 구분되어 있던 소형, 경형, 다목적 승용차를 통합하고 배기량으로 차형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별 차형의 기준정수 관리를 위해 승용차량의 차형을 추가함(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3).